

교원성과연봉제 평가 규정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18.3.1.		16		
2	2019.6.17.		17		
3	2019.8.26.		18		
4	2021.4.26.		19		
5	2021.9.6.		20		
6	2023.1.1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교원성과연봉제 평가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교원 성과연봉제 시행(이하 “성과연봉제”라 한다)을 위한 평가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유지) 성과연봉제 평가의 내용은 본인 외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부서에서는 교원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성과연봉제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성과연봉제 평가의 적용대상은 정년트랙 교원으로 한다.
2. 평가기간 : 성과연봉제 평가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업적급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직전 2년(1차 년도 1.1 ~ 2차 년도 12.31)의 기간을 적용한다. 단, 보직교원<나>의 경우 보직 기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8.26>
3. 평가의 구성 : 성과연봉제를 위한 평가는 개인성과평가, 공동성과평가, 학부(과)장 평가로 구성한다.
4. 대상별 평가방법 : 정년트랙교원은 <표1>의 분류에 따라 각종 평가를 반영한다. 단, 보직교원은 해당 보직을 평가기간 중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경우 적용한다.

<표1> 성과연봉제 대상별 평가반영방법 <개정2019.6.17>

구분		평가방법
일반교원	보직이 없는 일반교원	개인성과평가 80%, 공동성과평가 10%, 학부(과)장 평가 10%
보직교원 <가>	학부(과)장	개인성과평가 70%, 공동성과평가 20%, 단과대학장/총장* 평가 10%
보직교원 <나>	행정처장 및 단과대학장	부서별 연간사업계획에 따라 총장이 별도 성과평가
* 학부(과)장에 대한 평가는 소속 단과대학장이, 인문자연학부,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총장이 실시하며 <별첨2>의 양식에 평가한다. <개정 2021.9.6.>		

5. 평가군 구분 : 성과연봉제 평가대상 교원은 소속 학부(과) 및 전공계열에 따라 공학군, 비공학군으로 구분하며 해당교원은 <표2>와 같다. <개정 2018.3.1.>

<표2>성과연봉제 평가대상 평가군 구분 <개정 2021.4.26>

구분	해당학부(및 소속전공)
공학	- 공과대학, AI융합대학 소속 교원
비공학A	- 항공대학, 인문자연학부, 자유전공학부 소속 교원 (항공교통물류학부공학전공 교원 제외)
비공학B*	- 항공교통물류학부 공학전공 교원

※ 비공학B군은 비공학A군과 함께 평가하되 S등급과 A등급의 최대 배정인원은 등급에 관계없이 총 3명으로 제한한다.<개정 2023.1.16>

6. 평가결과의 적용 : 성과연봉제 평가 중 개인성과평가는 교원업적평가를 기초로 한다. 단, 성과연봉제 평가의 평가군은 교원 재계약 임용, 승진, 승급심사와는 별도로 한다.

제4조(성과연봉제 평가적용대상 예외) 성과연봉제 대상교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평가대상의 예외로 하여 총장이 별도로 성과평가한다. <개정 2019.6.17>

1. 신입교원 : 임용이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입교원
2. 정년퇴직(예정)교원 : 성과급 지급년도에 정년퇴직이 예정된 교원
(총장이 별도로 성과평가 한다.)

제 2 장 개인성과평가

제5조(평가반영) 개인성과평가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평가한 교원별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취득점수를 반영한다.

제6조(평가군별 평가영역 반영) 개인성과의 평가군별 교원업적평가 영역별 반영비율은 <표3>과 같다.

<표3>개인성과 평가군별 교원업적평가 영역별 반영비율

구분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공학군	35%	55%	10%
비공학군	45%	45%	10%

제7조(평가점수의 산출) 평가대상 교원은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을 평가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로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1.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의 <별표1>내지<별표4>에 의거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출한다. 단, 교육영역의 “수강생수”점수와 “강의평가”점수는 교원업적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하며 환산방법은 <표4>,<표5>와 같다.

<표4>책임시간 감면 교원의 교육업적 점수 환산방법

책임시간을 감면받는 교원의 경우, 일반교원의 책임시간으로 환산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다.

- ① 교원이 취득한 교육영역 점수 중, <수강생수>, <강의평가> 점수를 강의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수강생수>, <시간당 강의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② ①에서 취득한 <시간당 수강생수>, <시간당 강의평가> 각각의 점수에 일반교원의 책임시간(주당 9시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표5>초과강의시간에 대한 인정점수 산출방법<개정 2019.6.17>

학기별 책임시간을 초과한 강의시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① 책임시간 초과 3시간까지는 <시간당 수강생수>, <시간당 강의평가>점수의 150%를 적용한다.
- ② 책임시간 초과 4~6시간은 <시간당 수강생수>, <시간당 강의평가>점수의 50%를 적용한다.
- ③ 책임시간 초과 7시간부터는 <시간당 수강생수>, <시간당 강의평가>점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연구년이나 신규임용으로 한학기분의 교육영역 점수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점수를 연간점수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연구년으로 인하여 연간 교육점수가 없는 경우 해당 교원의 연구년 실시 이전 3년간 교육영역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한다.
2. 평가군별로 영역별 표준점수와 개인별 환산 표준점수를 산출한다. 산출방법은 <표6>, <표7>과 같다.

<표6>평가군별 영역평균 및 표준편차 산출

- ① 교육영역, 연구영역의 평가 1차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3개년 간 최대값 평균을 각각 산출한다.
- ② 교원 개인별 취득점수 중에서 ①을 초과하는 점수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점수를 ①로 설정하고 평가군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다.
- ③ 봉사영역은 ①을 적용하지 않고 평균, 표준편차를 각각 산출한다.

<표7>개인별 환산 표준점수 산출

- ① <표6>에서 구한 평가군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교원개인별 정규화값(z값)을 구한다.
 - 정규화값(z값) = (개인별점수-평가군별 평균점수)/평가군별 표준편차
- ② 교원 개인별 표준점수(T값)을 구한다.
 - 표준점수(T값) = {정규화값(z값)×10}+50
- ③ 평가군별로 산출한 영역별 최대값으로 ②를 나누어주고 <표3>의 평가군별 영역별 비율을 적용하여 개인별 점수를 산출한다.
- ④ ③에서 산출한 개인별 점수에 제 3조<표1>의 교원별 평가반영비율을 적용하여 개인성과평가의 최종점수로 한다.

제 3 장 공동성과평가

제8조(평가방법) 공동성과평가는 매년 실시하는 대학자체평가 중 학부(과)평가를 활용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로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1. 대학자체평가 평가편람에 따른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2. 연도별 자체평가 평가결과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학부(과)를 만점으로 환산하여 <표1>의 평가대상별 비율을 적용한다.
3. 대학자체평가의 학부(과) 평가대상이 아닌 학부(과)의 경우, 개인성과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산출한다.

제 4 장 학부(과)장 평가

제9조(평가방법) 학부(과)장 평가는 학부(과)장이 소속 교원에 대하여 <별첨1>의 서식에 의해 평가한다.

제10조(평가점수별 비율) 학부(과) 소속 교원의 평가점수별 최대인원은 <표8>의 비율로 하며, 소수점 이하로 산출된 평가인원의 배정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9.8.26>

<표8> 학부(과)장 평가점수별 인원비율 <개정 2019.6.17>

평가점수	0~2점 미만	2~4점 미만	4~6점 미만	6~8점 미만	8~10점
비율(%)	20	20	20	20	20

부 칙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 3조 2항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최초 시행에 따라 2018년도 업적급 지급을 위한 평가기간은 1년(2017.1.1. ~ 2017.12.31.)로 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교원성과연봉제 업적급 지급 대상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교원성과연봉제 업적급 지급 대상부터 적용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업적급 지급대상자부터 적용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6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 첨 1> 학부(과)장 교원 평가서<개정 2019.6.17>

학부(과)장 교원 평가서

평가대상 교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평가대상 교원								
	학부(과)							
	직급							
	성명							
항목	문항	가중*	10	8	6	4	2	0
1	교수역량 - 교수로서의 품위, 교원간의 협동성 등	0.1						
2	교육관리 및 개선 - 성적평가 공정성여부 강의품질개선 노력 등	0.2						
3	학생지도 - 학생상담(수강지도, 학사경고자, 공학인증 등)의 성실성 - 취업, 진로지도 활동의 적극성 등	0.2						
4	기여도 - 학부(과) 행사 참여도 및 학부(과) 업무 충실도 등	0.3						
5	기타 - 과제수주 노력, 대외활동 및 대학원생 유치 노력 등 ※ 기타 학부(과)에서 고유하게 평가하고 싶은 추가 항목이 있으신 경우 이 항목을 활용	0.2						
총점								

*문항별 가중 값은 학부(과)에서 조정 가능함

20 년 월 일

○ ○ ○ 학부(과)장 _____ (인)

<별첨2> 단과대학장 학부(과)장 평가서<개정 2019.6.17., 2021.9.6.>

학부(과)장 평가서

평가대상 학부(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평가대상 학부(과)장								
	학부(과)							
	직급							
	성명							
항목	문항	가중	10	8	6	4	2	0
1	보직교원으로서 역량 - 학부(과) 교원간의 소통능력, 학생 통솔능력	0.2						
2	지도력 - 학부(과) 발전노력 및 학부(과) 구성원 협동심 발휘	0.4						
3	학부(과) 발전정도 - 대학발전 노력에 대한 기여도	0.4						
총점								

20 년 월 일

○ ○ ○ 대학장* _____ (인)

※인문자연학부,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총장이 평가함